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2015. 2.

1. 개정 이유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 (2015. 1. 20) 됨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지침」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행위특례 적용의 일반기준 완화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최소면적을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지침 2-2-1)

나. 비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확화

민간공원 특례제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 (지침 2-3-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2절 1-2-1. (4) 중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비공원시설”로 하고, 같은 장 제3절 1-3-2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2장 제2절 2-2-1과 2-2-2의 “10만제곱미터”를 “5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장 제3절 2-3-2 중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거나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 하며, 2-3-3은 삭제한다.

제3장 제3절 3-3-2 (7) 중 “공사기관”을 “공사기간”으로 하고, 같은 장 제6절 3-6-1 중 “제21조의2제8항”을 “제21조의2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장 제8절 3-8-1 및 3-8-5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3-8-2 중 “20일”을 “14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장 총 칙 | 제1장 ----- |
| 제2절 정의 | 제2절 --- |
| 1-2-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2-1. ----- -----.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비공원시설부지”란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 내에 <u>공원시설이 아닌 시설</u> 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를 말한다. | (4) “비공원시설부지”란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 내에 <u>비공원시설</u> 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를 말한다. |
| (5) · (6) (생략) | (5) · (6) (현행과 같음) |
| 제3절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제3절 ----- ----- |
| 1-3-1. (생략) | 1-3-1. (현행과 같음) |
| 1-3-2.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u> 또는 <u>군수</u>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행위특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1-3-2.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u> 또는 <u>군수</u> (----- -)----- ----- ----- ----- ----- -----. |
| 제2장 행위특례 적용의 일반기준 | 제2장 ----- |
| 제2절 행위특례 적용 | 제2절 ----- |

2-2-1.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2-2. 행위특례는 도시공원 전체를 조성할 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을 10만제곱미터(국공유지 제외) 이상으로 분할하여 행위특례를 적용하여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후 잔여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제3절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2-3-1. (생략)

2-3-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공원시설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거나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한정한다.

2-3-3. 시장·군수는 도시공원과 인접한 용도지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 중에서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2-2-1. -----
----- 5만제곱미터
-----.

2-2-2. -----

----- 5만제
곱미터-----

----- 5만제곱미터 --

-----.

제3절 -----

2-3-1. (현행과 같음)

2-3-2. -----
----- 녹지지역·주거지
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
는 시설-----

-----.

<삭제>

수 있는 용도지역을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장 제안에 의한 행위특례사업
시행절차

제3절 제안서 제출

3-3-2. (생략)

(1) · (6) (생략)

(7) 도시공원, 도시계획, 회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기간, 개략 공사비, 토지매수 비용, 기본구상도 등 비용평가와 비공원시설의 분양(매각) 등 수익평가에 필요한 자료

(8) (생략)

제6절 협약 및 시행자 지정

3-6-1. 시장·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변경)되었을 때에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법 제21조의2 제8항에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3-6-2. · 3-6-4. (생략)

제8절 실시계획의 작성 등

3-8-1. 민간공원추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

제3장 -----

제3절 -----

3-3-2.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

----- 공사기간 -----

(8) (현행과 같음)

제6절 -----

3-6-1. -----

----- 제21조의2 제12항 -----
-----.

3-6-2. · 3-6-4. (현행과 같음)

제8절 -----

3-8-1. -----

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3-8-2.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 3-8-4. (생략)

3-8-5. 민간공원추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8-6. · 3-8-7. (생략)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3-8-2. -----

- 14일 -----
-----.

3-8-3. · 3-8-4. (현행과 같음)

3-8-5.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3-8-6. · 3-8-7. (현행과 같음)